

등록번호	재무과-1464
등록일자	2015.1.29.
결재일자	2015.1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지출팀장	재무과장	기획재정국장
윤미선	代윤미선	김순희	전결 01/29 박진석
협조	총무과장 유현모		

2015년도 설 명절휴가비 지급 계획



기획재정국
재무과

2015년도 설 명절휴가비 지급 계획

■ 지급근거
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 3

■ 지급대상

- 지급기준일(설날 2015.2.19.)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
 - ※ 연봉제 적용대상자, 실무수습, 공무상 질병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, 직위해제·정직기간 중인 공무원 제외

■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

지급기준일	지 급 액
설 (2015. 2. 19)	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× 60%

-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임. 다만,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함.
 - ※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.

■ 지급일자 : 2015. 2. 10.(화)

■ 지급방법

- 개인별 수당계좌로 대량이체
- 월중 인사 발령시(신규채용, 퇴직, 승진, 승급 등 각종 임용)는 지급 기준일(설)을 기준으로 결정

■ 추진일정

- 2015. 1. 30 : 명절휴가비(설) 지급안내 전부서 통보
- 2015. 2. 3 : 각 부서 지급조서 공람 후 재무과에 제출
- 2015. 2. 10 : 명절휴가비(설) 지급

■ 소요예산 : 1,908,635천원

- 일반회계 : 1,846,654천원
- 특별회계 : 61,981천원

■ 예산과목

- 일반회계
 - 총무과, 행정운영경비(총무과), 인력운영비, 인력운영비(구·동직원), 인건비, 보수/기타직보수
 - 의회사무과, 행정운영경비(의회사무과), 인력운영비, 인력운영비, 인건비, 보수
 - 건강도시과, 행정운영경비(건강도시과), 인력운영비, 인력운영비, 인건비, 보수
- 특별회계
 - 주차관리과, 행정운영경비(주차관리과), 인력운영비(주차장특별회계), 인력운영비, 인건비, 보수

명절휴가비 지급예시

〈 설날이 2월 19일인 경우 〉

- 2월 19일 이전의 신규채용 : 지급함
- 2월 19일 이전의 퇴직 : 지급하지 않음
- 2월 20일 이후의 신규채용 : 지급하지 않음
- 2월 20일 이후의 퇴직 : 지급함
-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, 정직기간에 2월 19일이 포함될 경우 : 지급하지 않음
- 2월 19일 이전의 승진 : 승진된 계급·호봉 월봉금액 기준
- 2월 20일 이후의 승진 : 승진되기 전의 계급·호봉 월봉금액 기준

예시

- 설날,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 가능한지 여부
 -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 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
- 영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2월 10일 기능9급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, 이 직원이 2월 13일자로 기능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9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
 -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·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금액의 60%를 지급하므로 기능8급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
-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
 -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, 강등(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).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
- 설이 2월 19일이라면 2월 16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
 -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(설날·추석)이므로 전액 지급함